

오동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오동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1. 이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학생은 인권에 관하여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되, 교직원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의 교육에 협력하고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 4 조 **【정의】**

- ①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②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 ③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 ④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제 5 조 **【교육 3주체의 책무】**

-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장 학교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6조 **【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7조 **【시설이용 및 환경】**

1.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2. 교내의 시설물에 낙서 등을 하지 아니 하는 등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1.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2.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9조 **【교우관계】** 교내에서는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0조 **【폭력예방】**

1.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끼여들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조를 미리 알아차렸을 경우 나 폭력 또는 집단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려야 하며, 이 경우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밝히지 않고 할 수도 있다.

가.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해당)학생의 보호자

나. 학교나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다. 푸른나무재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 1588-9128

라. 학교폭력신고전화 117

마.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바. 경찰청 범죄신고 112 등

3.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반드시 신고를 하여 보호를 받는다.

제11조 【동아리 활동】 특기·적성 교육과 계발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은 계발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 하는데 노력한다.
2. 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특별활동 담당부서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3. 허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제12조 【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 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학생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식시간에는 다음시간 준비와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2.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 도서관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이용규칙을 잘 지켜야 한다.
3.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3조 【학급 내 봉사활동】 학생의 학급 내 봉사활동(일인일역)사항은 각 호와 같다.

1. 학급 내 봉사활동 (일인일역) 임무를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이행한다.
2. 학급환경 정돈,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3.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임교사에게 즉시 보고 한다.

제14조 【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입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1. 교내에서 학생이 회합을 할 때
2. 실외활동 시간에 교실에 남고자 할 때
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할 때
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15조 【출결사항】 출결사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 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1. 학생의 출결결석 상황을 파악하여 근면성, 안전지도, 건강지도 등 생활지도 자료로 활용함과 아울러 학생 재적관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등교시각은 09시 00분까지로 하며, 하교시각은 청소활동을 포함한 학급담임의 학급 교육과정 활동 종료 시각으로 한다.
3. 지각은 1교시 시작 후 등교하는 것을 말하고, 조퇴는 청소활동을 제외한 교과 및 특별활동, 학교재량 시간 활동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하교하는 것으로 사전에 학부모의 전화나 편지 등의 증빙이 있을 경우 허락한다.
4. 다음과 같이 현장 체험을 통하여 유의미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경우, 학교를 출석하지 않더라도 학교출석으로 처리한다. 이때 현장학습 신청서에 의한 학교장의 사전 허가와 사후 학습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현장 체험학습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가족동반 여행, 친인척 방문, 견학 활동, 체험 활동, 기타
나. 국내외 현장(체험)학습 기간은 20일을 원칙으로 하나,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 사정으로 인한 초과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학교장의 상황 판단으로 천재지변으로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라 인정될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6.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훈련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출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7. (생리결석) 보호자의 서명(또는 전화 요청)으로 학교장이 확인한 생리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학생에 한하여 결석으로 처리하지 아니한다.

제16조 【경조사 출결】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1. 결혼 : 형제, 자매 (1일)
2. 입양 : 본인(20일)
3. 사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5일),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2일), 부모의 형제·자매(1일)

제17조 【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질병 결석

가. 질병으로 인하여 결석한 경우

나.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담임교사에게 질병임을 증명할 서류와 함께 결석계를 제출하여 담임이 인정한 경우

2. 무단 결석: 태만, 가출 등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을 초과한 경우 등

3. 기타 결석

가.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제18조 【장기결석】 장기결석은 학교에 연속적으로 10일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반복적인 지각, 조퇴, 결과는 동일 사안으로 ‘10회’이상 발생시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사항 특기사항에 입력한다.

제19조 【차별 받지 않을 권리】

1.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 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2. 학교구성원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3. 학교는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의사 표현의 자유】

1.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학교 내 표현의 자유는 보장된다. 단, 게시물의 부착은 학생자치계시관 등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여야 하며,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학교 공동체 질서를 훼손하는 내용, 사적 영리 목적이나 특정 정당이나 사회 단체를 지지하는 등의 내용을 배포·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제21조 【소지 금지 물품】 학생은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단,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의 장이 허용한 물품은 예외로 한다.

1. 흉기 등 사람의 신체·생명 또는 시설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

2. 성냥, 라이터, 폭죽 등 인화물질 및 전열기

3. 도박에 관련된 물건

4.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음란하고 저속한 내용을 담은 물건

5.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대마 등 향정신성 물질

제22조 【소지품 검사의 절차 등】

1. 학생이 소지 금지 물품을 소지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교육 목적상 필요한 경우, 교사는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이유를 설명하고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학생이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소지한 것이 명백하고, 그 안전을 보호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의 동의 없이 물건을 수거할 수 있다.

3. 교사는 물건을 수거한 즉시 학생 및 보호자에게 수거 물건 목록을 통지해 주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상당한 기간 내에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그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4. 소지품 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학생과 동성의 교사가 실시하되, 검사 과정에서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에 동의하지 않아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교사는 소지품 검사의 목적·이유·절차·학생 의견을 기재하여 이를 생활교육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제2절 교외생활

제23조 【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2.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 동급생, 하급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3.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4.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5.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6.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7.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을 금한다.

제24조 【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25조 【정보통신 생활】 건전한 정보통신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정보통신 문화를 조성한다.
2.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3.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4.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과 불법 유해 매체를 멀리한다.
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8. 컴퓨터는 정해진 이용 시간에만 쓴다.

제26조 【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내에서 휴대전화기는 휴대할 수 있으나 **학생 자율관리 원칙에 근거하여** 정규교육과정 운영시간에는 사용을 자제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2. 학생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업 등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 교

사는 해당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사는 방과 후 해당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돌려준다.

3.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4.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며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27조 【개인정보 열람·정정·수정】

1. 학생은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학생은 본인에 관한 기록 중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3. 학교의 장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28조 【학교정보 접근에 관한 권리】

1. 학교생활인권규정은 누구나 열람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2.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인권규정이 제·개정된 경우 이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 한 후 30일 내에 개정사항을 학교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등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3. 학교의 장은 예·결산 등 학교 재정관련 정보를 학교구성원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생활교육

제1절 징계 외 생활교육

제29조 【안전지도】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제30조 【진로지도】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진로지도에 힘쓴다.

1. 진로교육에 대한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2.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5-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3.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4.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1조 【교외생활 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2절 문제행동 학생 지도 방법

제32조 【목적】 학생의 인권과 교사의 교권이 존중되는 학생생활교육을 통하여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정착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33조 【체벌 금지】 금지해야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구에 의한 체벌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3.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학생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어폭력 행위

제34조 【방침】

1. 교육활동을 방해하거나 다른 학생에게 피해가 되는 행동을 하는 등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해 단계별로 조치를 강화한다.
2. 문제행동에 대한 교사의 조치 내용을 학생들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3. 단계별 조치 과정에서 해당 학생이 문제 상황에 대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4. 타임아웃 된 학생을 위한 성찰교실의 대안적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한다.
5. 학생의 선도등 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6.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대상자, 심의 내용 및 결과등은 공고하지 않는다.

제35조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구성·운영】

1. 구성 및 임무

- 가. 각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과 필요한 수의 위원을 둔다.
- 나. 위원장은 교감, 부위원장은 생활인성을 담당하는 부장이 되고, 위원의 수는 학교 규모에 따라 총 5인 이상 10인 이하로 정하며, 교직원 중에서 교무분장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 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고 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 라. 학교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 징계 및 그 밖의 선도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 지역 사회 인사, 보호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마. 교원 중 위원회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둔다.

2. 기능

- 가. 학생선도에 관한 사항 심의
- 나. 학생인권보호 및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계획 심의
- 다.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3. 운영

- 가. 위원회 개최 시, 이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보호자의 동의를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기록한다.
- 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다. 위원회는 심의 전에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와 방법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라. 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은 반드시 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 마. 학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이유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 바. 징계 조치 결과를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사. 징계 조치에 대한 결과 통지 시, 학교 내 재심의 신청기간 등을 안내한다.
- 아. 학교 내 재심의 신청 횟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회에 한한다.
- 자. 학교 내 재심의 신청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5일 이내로 정한다.

제36조 【단계별 운영 방법】 문제행동 학생에 대한 단계별 지도 방법은 다음 각 호 같다.

1. 상담 및 경고

학생이 문제행동을 했을 때 해당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경고하고 훈계한다.

2. 교실 안 지도

교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문제 행동이 반복될 경우 담당교사는 교실 내에서 학생을 격리한 후 수업을 진행한다.

3. 학교관리자 특별 면담

성찰교실 프로그램 이행 후에도 문제행동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학교관리자가 해당 학생 및 학부모를 특별 면담한다.

4. 지역교육지원청 연계 교육

지역교육지원청에 협조를 요청하여 전문상담 교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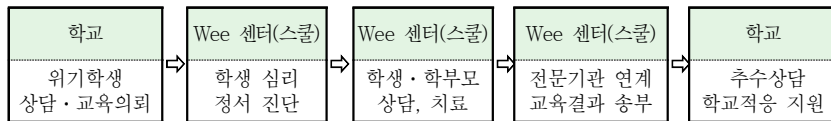
제37조 【선도대상】

1. 다음과 같은 행위에 한하여 선도의 대상으로 한다.

- 가. 같은 비행을 3회 이상 반복 위반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 나. 교사의 시정지시를 2회 이상 어기고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을 때
- 다. 수업 시간에 지도 교사의 교육활동을 직접적으로 방해한 행위
- 라. 학습 태도가 지극히 불량한 행위
- 마. 교사가 부여한 과제 불이행 행위
- 바. 학교 규칙을 위반하여 학교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 사. 정직하지 못한 행동을 반복하거나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
- 아. 기타 사회 통념상 고쳐야 될 행위

제38조 【학생의 선도 처분】

- 1.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가. 학교내의 봉사 (1회 10시간) (교내외 청소하기, 도서실 봉사, 학교 행사 준비 및 정리, 학교 내 식물 가꾸기)
 - 나. 사회봉사 (복지 시설 및 공공시설 일손 돕기)
 - 다. 특별교육이수 (교육감이 지정하는 기관 (Wee 센터, 대안위탁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 제공)



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2. 학교장은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3. 학교장은 규정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 4. 학교장은 특별교육이수 및 출석정지의 징계를 받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필요한 교육방법을 마련·운영 하여야 한다.

제39조 【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의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도의적 책임을 진다.

제3절 선도 처분에 대한 이의 제기

제40조 【학교단위 이의제기】

- 1. 선도 의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학생 및 보호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2. 이때 학교는 이의 신청서를 제출토록 서식을 제공하고 이의 신청서에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하도록 한다.
- 3. 소위원회에서 재심의 여부를 검토·심의하여 학교장 결재로 심의를 결정한다.
- 4. 재심의 결과에 대하여 학교장 결재, 재공고, 통보, 선도시행의 절차로 처리한다.

제4장 학생자치

제1절 학급 학생자치회

제41조 【목적】 학급 학생자치회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명랑하고 즐겁게 영위하며, 학급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토론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생활 태도를 기르는데 있다.

제42조 【구성원】 학급 학생자치회의 활동의 구성원은 학급 학생 전원으로 한다.

제43조 【기구와 임무】 학급 활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학급 학생자치회를 두며, 그 기구와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학급 학생자치회 의장이 되며, 회의를 맡아 진행한다.
2. 부회장: 학급 학생자치회 부의장이 되며, 회장을 도와 회의 진행을 돕는다.
3. 부서: 학급 학생자치회에 필요한 부서를 학급 특성에 맞게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4조 【임원】 학급 학생자치회에는 지도위원과 다음의 위원을 둔다.

1. 지도 위원: 담임교사
2. 회장 1명
3. 부회장 1명
4. 각 부서별 부장 1명

제45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

1. 학급 학생자치회 회장과 부회장은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2. 임원의 임기는 한 학기로 한다.

제46조 【회장부회장의 임무】

1. 회장은 학급 활동에 책임을 지고,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유고 시 회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한다.
2. 회장·부회장은 학급 학생자치회를 대표하며 전교 어린이회의의 대의원이다.

제2절 전교 학생자치회

제47조 【명칭】 본회는 오동초등학교 전교 학생자치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48조 【위치】 본회는 오동초등학교 내에 둔다.

제49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교 회장, 부회장 및 3-6학년의 회장, 부회장, 으로 한다.

제50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명랑하고 즐겁게 영위하며, 학급 및 학교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토론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토론 문화를 정착시키고 민주 시민으로서의 생활 태도를 기르는데 있다.

제51조 【사전저도 자치활동】 본회의 모든 활동은 학칙과 이 규정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52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6학년)
2. 부회장 2명 (6학년, 5학년)
3. 각 부서별 부장 1명

제53조 【회장·부회장 후보의 자격】

1. 회장 후보는 본교에 재학하는 6학년 학생으로 한다.
2. 부회장 후보는 본교에 재학하는 5, 6학년 학생으로 한다.

제54조 【회장·부회장의 선출방법】 회장과 부회장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거 다수표를 득한 자로 한다.

제55조 【기타 임원의 선출】 본회의 각부 부장은 전교 어린이회에서 간접 선출한다.

제56조 【선거권】 본회의 구성을 위한 선거권은 본교에 재학중인 3, 4, 5, 6학년 학생 전원이 가진다.

제57조 【후보 등록】 선거 공고일로 부터 2일 이내에 학생들이 연서한 추천인 명부를 담당교사에게 제출한다.

제58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간에만 실시한다.

제59조 【선거 벽보】 선거벽보는 지정된 규격과 지정된 장소에 한하여 게시할 수 있다.

제60조 【후보 자격 박탈】 본회 회장·부회장 후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어길 경우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1. 후보자 비방
2. 벽보 훼손
3. 선거권자에게 금품 및 음식물 제공

제61조 【임명】 본회 회장·부회장에 당선된 학생은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62조 【임무】

1. 회장은 전교 학생자치회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3조 【회의 운영】

1.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나눈다.
2.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한다.
3. 임시회의는 학칙의 규정에 의할 때와 회의 개최 필요시 개최한다.

제64조 【의결 정족수】 본회의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중요한 사안의 의결은 재적 대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회장이 결정할 수 있다.
2. 일반적인 사안의 의결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된다.

제65조 【각 부서의 활동】

전교 학생자치회에 필요한 각 부서를 조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장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제66조 【규정개정심의위원회】

1. 학칙 및 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 교원, 학부모, 전문가 대표로 구성한다.
3. 위원회의 인원구성은 학생의 수가 반드시 위원회의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되며, 교원위원의 수는 학생의 수 이하로 구성한다.
4.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5. 학교장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제 6 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생활지도 규정

1절 생활지도의 범위

제 67 조 【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학업 및 진로: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2. 보건 및 안전: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인성 및 대인관계: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4. 그 밖의 분야: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

2절 생활지도의 방식

제 68 조 【조언】

- ①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 ③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 ④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 69 조 【상담】

- ①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

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상담은 수업 외 시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장과 보호자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 ④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이외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⑥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 3. 근무 시간 이외의 상담
-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 ⑨ 보호자가 상담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70 조 【주의】

- ①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 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 71 조 【훈육】

- ①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제5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 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방법〉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의 이동	대상:수업방해행동 학생 교사가 수업시간 중 2회 이상 조언, 주의 등의 방 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 하는 학생	교실 뒤편 (10분 내외)	교실 뒤편 교사가 지정 하는 위치로 10분 내외 분리 또는 교사 판단 하 에 복귀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앉거 나 선 상태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2호 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가 1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교실 뒤편 (해당 수업 종료 시) (실외 교육활동 시 학 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교실 뒤편 교사가 지정 하는 위치로 해당 수업 종료시 또는 교사 판단 하에 복귀	
	나 1호 또는 '2-가' 지도 에도 불구하고 교육 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교실 앞 편 (해당 수업 종료 시) (실외 교육활동 시 학 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교실 앞편 교사가 지 정하는 위치로 해당 수업 종료시 또는 교 사 판단 하에 복귀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3호 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 소로의 분 리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 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 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도서관 학습지원실 등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의 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 계하여 학생을 지정 장소 로 이동 (상담-교감-교장-수업이 없 는 교사) 교과전담 수업시간의 경 우(담임-상담-교감-교장- 수업이 없는 교사)	행 동 성 찰 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 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 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수업 시간에 지각하 여 교육활동을 방해 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 간(20분)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3호의 지도를 성 실히 따르지 않는 경 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 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 등 지정 장소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 과 사유를 통지함	행동성찰문 등 과제 부여

- ⑧ 학교의 장은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및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⑨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⑩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⑪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 ⑫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여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소지금지 물품(학칙으로 정한 물품)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9조제3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휴대폰 등)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 ·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하교할 때 되돌려줌 · 가정통보 및 지도요청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위험한 장난감 등	3일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 ⑩ 학생 물품을 분리 보관하는 생활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⑪ 학급담당교원(담임교사)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 72 조 【훈계】

- ①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 ③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

제 73 조 【보상】

- ①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 74 조 【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 75 조 【이의제기】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 76 조 【기타 사항】

-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 **【개정일】** 이 규정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 **【개정일】** 이 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제1조 **【개정일】** 이 규정은 2015년 6월 10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제1조 **【개정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 **【개정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3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제1조 **【개정일】** 이 규정은 2019년 12월 16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제1조 **【개정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26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제1조 **【개정일】**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제2조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규정을 반영한 개정으로 반영 내용과 기존 규정과 상충될 때 고시내용을 반영한 제1장(총칙), 제6장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에 따른 생활지도 규정이 우선한다.
- 제1조 **【개정일】** 이 규정은 2024년 4월 12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서식1 개인 휴대전화 사용 허가 요청서 서식(예시)

개인 휴대전화(정보통신 기능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허가 요청서	
학생 성명	
학년 / 반	
신청 물품	
사용 신청 일시	년 월 일 시
사용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 목적	※ 학생의 휴대전화(이하 정보통신 기능 휴대용 전자기기를 포함한다) 종류, 구체적인 사용 행위와 목적 등 구체적으로 기술
증빙 자료	

-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받고자 함.
- ◆ 휴대전화 보관 및 사용에 따른 책임은 물품 소유자 개인에게 있음.
- ◆ 기존 목적에 맞지 않는 휴대전화 사용 또는 불법적 사용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년	월	일
학생 성명	(서명 또는 인)		
학부모 성명	(서명 또는 인)		

오동초등학교장 귀하

서식2 00실(일시 분리장소) 분리 지도 대장(예시)

<오동초등학교>				
일자	202 . . . ()		확인(서명)	특별실 담당자
	교시	수업담당교사		분리사유
내용	1	○○○	2회 전자기기 무단사용 깨워도 계속 누워있음 수업에 참여하지 않음	6-1 ○○○(5/1, 7/5)
특이 사항	1. 6-1 ○○○. 주어진 과제 미수행으로 시간 연장됨을 2교시 교과수업담당 교사에게 알림. 2. 6-1 ○○○. 무선이어폰을 이용하여 음악을 듣는 등 특별실(성찰실) 규칙 위반으로 물품을 분리보관하여 담임교사에게 인계함.			

서식3 일시 분리로 인한 가정학습 실시 학부모 확인서(예시)

보호자님께!

오동초등학교장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훈육)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호자에게 일시적으로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보호자에게 인계하여 가정학습을 시행하고자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학습 실시에 따른 보호자 협조사항

- (가정학습보호자확인서 제출) 아래의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예시) : ‘보호자 확인서’를 (담임)교사에게 사진으로 전송, 메일, 출력물 지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제출
- (가정학습 시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문자 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문의: 031-852-1072 (생활인성부장)

202 년 월 일

오동초등학교장 (직인)

가정학습 보호자 확인서

아래와 같이 가정학습을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학년 반 이름

가정학습 일시	가정학습 내용
년 월 일	○○○ 온라인 학습 참여, 교과서 내용 정리 등
특이사항	

보호자 성명		(서명)
보호자 연락처1		학생과의 관계()
보호자 연락처2		학생과의 관계()

서식4 교실 밖 일시적 분리 조치에 따른 분리장소 규칙(예시)

※ 교실 밖 일시 분리 조치 지도에 따른 분리장소 규칙 게시물
 교실, 학교계시판, 학교 홈페이지, 분리실 등에 게시하여 숙지할 수 있도록 안내

성찰실에서 지켜야 할 사항

성찰실에 있는 동안 수업활동에 참여할 수 없으며 1일 ()회 이상 누적될 경우 보호자 인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과제를 완수하고 아래 규칙을 성실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1. 시간이 부여된 경우 정시에 착석해야 합니다.
2. 주어진 교육 프로그램에 따라야 합니다.
3. 스마트워치,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등 전자기기는 사용 불가합니다.
4. 지정된 자리에 앉아야 하며 자리 이동을 할 수 없습니다.
5. 물 이외의 음식 또는 음료수는 먹을 수 없습니다.
6. 꼭 필요한 질문 이외의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7.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야 하며 잠을 자거나 엎드려 있을 수 없습니다.
8. 정해진 성찰 과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9.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시간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10. 학생이 이를 거부할 경우 학칙에 따라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동초등학교장

서식5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예시)

물품 분리보관 신고서

학생 성명				학번				
분리보관 일시	년 월 일 시							
분리보관 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분리보관 물품								
분리보관 해당 요건	요건							해당 사항에 체크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화학약품 등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마약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본 교원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제9항에 따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 사용으로 해당 물품을 분리보관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오동초등학교장 귀하

물품 분리보관 확인서

학생 성명				학번			
분리보관 일시	년 월 일 시						
분리보관 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분리보관 물품							
분리보관 경위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은 경위로 해당 물품을 분리보관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분리보관 물품 중 타인과 자신의 안전에 해가 되거나 학생에게 금지된 물건 등은 보호자가 직접 물품을 회수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호자가 원할 경우, 해당 물건을 반환하지 않고 폐기할 수 있습니다.

*분리보관 기간(3일) 종료 후 다시 3일이 지난 후에는 물품을 자동으로 폐기하며, 해당 기간 이후 학교는 물건 폐기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오동초등학교장

서식6 물품 폐기 확인서(예시)

물품 폐기 확인서	
학생 성명	
학생 학년 / 반	
물품 발견 일시	년 월 일 시
즉각 폐기 물품	
즉각 폐기 경위	※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의 종류 및 구체적인 사용 행위, 폐기의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p>본 교원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12조제9항에 따라,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부적합한 물품 사용으로 해당 물품을 위와 같은 경위로 학생으로부터 분리 보관 후 폐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p>	
<p>년 월 일</p> <p>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p> <p>오동초등학교장 귀하</p>	

서식7 성찰하는 글쓰기 서식(예시)

성찰하는 글쓰기			
일자	년 월 일 시		
학번		학생 성명	
<p>※ 다음 문항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작성해 보세요.</p>			
<p>1. 자신에게 있었던 문제 상황(친구와의 갈등, 교칙위반 등)은 무엇인가요?</p>			
<p>2.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친구, 부모님, 선생님)은 어떠한 기분을 느꼈을까요?</p>			
<p>3. 앞으로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자신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p>			
<p>4. 주변 사람들이(친구, 부모님, 선생님)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나요?</p>			
<p>년 월 일</p> <p>확인 교원 성명 (서명 또는 인)</p>			